

의안번호	2206286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4.1.6.
추 계 번호	24D58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병급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1조 9,901억원(연평균 3,98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병급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병급금지규정 삭제 (안 제6조제1항)	4,162	4,069	3,978	3,889	3,802	19,901	3,98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한 단서 삭제(제1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1항(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삭제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한 단서를 삭제(제1항) 할 경우, 기존에 병급금지 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가 신규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지급단가는 2024년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함
- 병급금지조항 삭제로 인한 참전명예수당 신규 수급자 수는 2023년말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참전유공자 수에 최근 5년간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 동안의 기간을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금지 규정 삭제(안 제6조 제1항)

(1) 대상자 수

-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받는 보상금, 무공수훈자가 받는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받는 고엽제 수당 대상자가 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상기 보상금 및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이후 “병급금지”) 규정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47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 감소

[표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90,329	173,733	161,577	146,932	132,479	-8.7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에 따른 병급금지 대상별 보상금 및 수당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으로 다른 보상금 및 수당보다 낮아, 추계에서는 병급금지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가 모두 보상금이나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지급대상별 보상금 및 수당 현황: 2024년

(단위: 천원)

구분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고엽제법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재해 부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단가	608~3,681	608~3,681	480~500	1,612	426~2,577	568~1,175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의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2023년말 기준 9만 4,593명임

[표 4]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 2023년
(단위: 명)

	보상금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합계
인원	54,632	31,645	8,316	94,593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말 기준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에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병급허용 시 참전명예수당 신규수급자수를 추정

[표 5] 병급허용 시 참전명예수당 신규수급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

병급 유형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감률
1. 참전명예수당+보상금	41,632	38,027	34,734	31,726	28,978	-8.7
2. 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	24,115	22,027	20,119	18,377	16,785	-8.7
3.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6,337	5,788	5,287	4,829	4,411	-8.7
A. 병급인원(1+2+3)	72,084	65,842	60,140	54,932	50,174	-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2020~2024년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월 지급액	320	340	350	390	420	7.0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0%를 적용하여, 현행법 적용 시 추계기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7]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감률
월 지급액	481	515	551	590	632	7.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병급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병급금지 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모든 참전유공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1조 9,901억원으로 추계됨

[표 8] 병급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신규지급자(명)	72,084	65,842	60,140	54,932	50,174	—
지급단가(천원)	481	515	551	590	632	—
추가재정소요(억원)	4,162	4,069	3,978	3,889	3,802	19,90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병급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1조 9,901억원(연평균 3,980억원)으로 추계됨

[표 9] 병급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병급금지규정 삭제 (안 제6조제1항)	4,162	4,069	3,978	3,889	3,802	19,901	3,98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 증감률을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